

총동창회 회칙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총동창회 회칙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명칭) 본 회는 한국항공대학교동창회(이하 '본 회'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 (목적) 본 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사업)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회원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
2. 기술협력에 관한 사항
3. 장학에 관한 사항
4. 기타 필요한 사업

제4조 (구성) 본 회는 과별, 지역별, 직장별 동문회를 둘 수 있다.

제 2 장 조직 및 회의

제5조 (회원) 본 회는 다음 회원으로 조직한다.

1. 정 회원 : 모교를 졸업한 자(대학원 포함)
2. 특별회원 : 모교발전에 공헌이 큰 자와 모교의 전직 및 현직 교원으로 이 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
3. 준 회원 : 모교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본 회 입회를 희망하는 자

제6조 (회원의 의무) 본 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부담과 회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7조 (사무소) ① 본 회의 사무소는 모교 또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과별 및 지역, 직장별 동문회(이하 '분 회'라 한다)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② 본 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. 사무국 직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그 직제는 회장이 정한다.

제8조 (총회)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총회는 가급적 매년 6월 16일 개교기념일에 회장이 소집한다.

③ 임시총회는 회장, 상임이사회 및 회원 5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
④ 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회칙 개정
2. 예산 결산의 승인
3. 전년도 사업보고 및 신년도 사업계획의 승인
4. 임원선출
5.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

제9조 (이사회) ①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
- ② 이사회는 회장, 상임이사회 또는 이사 5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- ③ 이사회는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 1. 총회 결의사항의 집행상황 심의
 2. 차기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및 승인
 3. 특별회원에 대한 동의
 4. 회원 상벌에 관한 사항
 5. 상임이사의 임명 승인
 6. 기타

제10조 (상임이사회)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.

-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- ③ 상임이사회는 재적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
- ④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 1.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편성
 2. 간사의 임명 승인
 3. 본 회설치 및 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
 4.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사항
 5.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

제 3 장 임 원

제11조 (임원)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
1. 회 장 : 1명
2. 부 회 장 : 10명 이내(당연직 포함)
3. 상임이사 : 20명 내외
4. 이 사 : 100명 이상(기별, 과별, 지역별, 직장별, 분회장 포함)
5. 감 사 : 2명

제12조 (임원의 자격) 임원은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.

1. 금치산자
2.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
3. 형사 입건 중에 있거나 지명수배된 자

제13조 (임원의 선출)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
- ②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며 총회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. 다만 당연직 부회장은 기학과 동문회장과 10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지역 및 직장 동문회장으로 한다.

- ③ 이사는 회장의 천거로 총회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.
- ④ 상임이사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 다만, 상임이사 중 총무담당, 재무담당, 조직담당, 섭외담당, 사업담당 상임이사를 둔다.

제14조 (임원의 직무)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-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. 직무대리권의 순서는 회장이 미리 정한다.
- ③ 상임이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 1. 총무담당 상임이사는 회장, 부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전담한다.
 2. 재무담당 상임이사는 재정전반을 담당한다.
 3. 조직담당 상임이사는 본 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전담한다.
 4. 섭외담당 상임이사는 대내·외에 필요한 섭외사항을 전담한다.
 5. 사업담당 상임이사는 본 회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전담한다.

- ④ 감사는 본 회의 회계사무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.

제15조 (임원의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- ② 결원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③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.

제16조 (명예회장과 고문) ① 본 회의 회무에 대한 자문과 협찬을 위하여 명예회장과 고문을 둔다.

- ② 명예회장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추대한다.
- ③ 고문은 전직, 현직 학장과 역대 회장을 추대하고 특별회원 중에서 본 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인사를 상임이사회에 결의를 거쳐 추대할 수 있다.

제17조 (간사) ① 본 회의 유기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- ② 간사는 학과, 졸업년도, 지역 및 직장별로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
- ③ 간사는 회장이 의뢰한 사무를 대행한다.

제 4 장 재 정

제18조 (재정) ① 본 회의 재정수입은 입회비, 연회비, 종신회비 및 찬조금으로 한다.

- ② 각회비의 금액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19조 (회계년도)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부 칙

1.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.
2. 본 회의는 운영상 필요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3. 본 회칙은 92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.